

## 1. 지역개발기금 차입승인

| 사 업 명                   | 차입신청액<br>(백만원) | 차입시기   | 차입<br>이자율 | 상환조건            | 차입선            | 상환재원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천시 중동<br>지구 공영<br>개발사업 | 37,336         | 94 상반기 | 년리 8%     | 3년거치 2년<br>균분상환 | 경기도 지역<br>개발기금 | 공영개발수익<br>금(용지매출<br>수입) |

## 2. 제안사유

90년 2월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조성비와 기반시설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90년 3월부터 4월까지 828억원을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으나 91년 은행감독원 감사 시 농협에서 차입한 기금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여신규정에 위반되어 92. 7. 31 사모공채를 2년 만기로 발행하여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에서 인수하였으며, 경기도 예산 13382-231(93. 3. 26)호와 관련 지방 공영개발사업의 내실적 추진을 위하여 조건이 나쁜 지방채를 조기상환 또는 차환하고 장기저리의 지역개발기금 등 우량자금을 최대한 환용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모공채는 이자가 년 11.5%의 고금리로서 부천시의 재정 손실이 크므로 저금리 8%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94년 초에 차입하여 상환함으로써 이자 손실을 줄이고자 합니다.

##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229                  |
| 의 건<br>년 월 일 | 93. 12. 24<br>(제25회) |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## 1. 추진개요

-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 승인 : 제2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(93. 7. 19)
-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안 확정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
-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안 승인 : 제2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(93. 9. 9)
- 정비대상 조례 심의 의견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93. 12. 6)
  - 심의결과 : 총15건(제정 2건, 개정 10건, 폐지 3건)
  - 조 례 안 : 별 칙
- 활동기간 연장 의견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93. 12. 6)

## 2. 활동기간 연장

## 가. 주 문

-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93. 9. 9 - 93. 12. 8에서 93. 9. 9 - 94. 3. 10로 연장 변경한다.

## 나. 제출이유

- 부천시시립예술평단채설치조례, 부천시문화상조례,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,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으며,
-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상위법의 합치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되고 있으므로 94년 3월 1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.

##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230   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년 월 일 | 93. 12. 24<br>(제25회) |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- 자치법규 및 공고, 고시 등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충족
-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홍보수단 정립
- 각종 공보를 통합 발행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법적 효과 부여

☐ 주요골자

- 목 적(안 제1조)
- 명 칭(안 제2조)
- 규격 및 발행일(안 제3조)
- 게재내용(안 제4조)
- 배부기준(안 제5조)
- 편집주간 및 보조원(안 제6조)

##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의 편집, 배부,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시보의 명칭은 “부천시 시보”라 한다.

제3조(규격 및 발행일)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고, 격주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, 고시 및 공고일 등 법정게시일자에 따라 필요 시 수시 발행할 수 있다.

제4조(게재내용) ① 조례, 규칙, 훈령, 예규, 인사, 자치법규, 임법예고, 고시, 공고 등을 게재한다.